

Tax Services

인도네시아 포켓텍스북 2010

PT Prima Wahana Caraka

PRICEWATERHOUSECOOPERS 

본 책자는 2010년 3월 19일 현재의 관련 법률 및 실무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 책자는 PwC가 매년 발행하는 *Indonesian Pocket Tax Book 2010*을 번역한 것으로, 인도네시아 재무담당모임(인재모)의 인도네시아 투자법인 운영사례집 발간 시 포함된 한글번역본을 PwC Korea Business Desk에서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수정한 것입니다.

본 책자는 인도네시아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책자의 작성시 관련 법률 및 실무를 적절히 반영하였으나, 포함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책자 이용 시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별첨된 영문내용을 우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세무관련 규정의 경우 관련내용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으며, 법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바, 실질적인 업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용어 설명 |

- MoF : Ministry of Finance 재무부
- BAPEPAM : the Capital Market Supervisory Board 증권시장감독위
- BKPM : the National Board of Investment 투자청
- DGT : the Director General of Tax 국세청
- KB : Bonded Zone 보세구역
- KAPET : Integrated Economic Development Area 경제발전통합지구
- KUP : the General Tax Provisions and Procedures Law 조세기본법
- CITR : Corporate Income Tax Returns 법인소득세 확정신고
- PTKP : Annual non-taxable income 소득공제금액
- NPWP : Tax ID Number

Corporate Income Tax (법인소득세)

Tax rates (적용세율)

2010년부터 단일세율 25%가 적용된다. 총 발행주식의 최저 40%를 공개한 세법상 기준을 충족한 상장회사는 표준세율에서 5%가 할인된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7page 참조)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미만의 소기업은 납세소득 48억 루피아까지 표준세율의 50%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Tax residence (세법상 거주자)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세법상 거주자로서 인정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일반적으로 거주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세금납부 의무가 있다.

Tax payments (납세방법)

거주 납세의무자 및 외국기업 중 고정사업장을 가진 자는 직접납부의 방법, 제3자 원천징수, 혹은 두 가지 혼합의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의 경우 소득을 지불하는 인도네시아 상대방을 통해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인도네시아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거주 납세의무자와 고정사업장을 가진 자는 월할 납부세금(PPH 25)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데, 당해연도 납부세금의 선납으로써 월할 납부세금은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의 법인세신고서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한편, 신설법인, 금융리스회사, 은행 및 국영회사 등은 별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월할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특정소득에 대한 제3자에 의한 원천징수 금액(PPH 23) 혹은 특정 거래에 대한 선납소득세(예를들어, 수입시에 납부한 원천징수금액, PPH 22)는 소득자 또는 수입업자의 연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원천징수세 참조)

연간 선납 소득세 총액(PPH 22, 23 및 25)과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PPH 24)이 총 납부할 세금을 초과할 경우 회사는 법인세신고서를 확정 제출하기 이전에 환급 신청하여야 한다.(PPH 29)

거주자 및 고정사업장을 가진 자에게 귀속되는 특정소득은 최종분리과세(Final Income Tax)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 3자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금(PPH 4.2 에 근거)은 그 소득발생시점에 원천징수 됨으로써 종결된다. (원천징수세 참조)

또한,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의 인니 원천소득에 대해 그 소득을 지급하는 인니 거주자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금(PPH 26)도 최종분리과세(Final Income Tax)를 적용받아 그 시점에 종결된다. (원천징수세 참조)

Business profits (세무상 사업이익)

세무상의 사업이익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기초로 계산하되, 몇 가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확정한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사업이익을 획득, 입수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손금산입(deduction) 가능하다. 다만, 회계상 비용이 세무상 손금산입이 가능할 경우에도 시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Disallowed deductions (손금불산입 비용)

다음과 같은 비용은 세무상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

- a. 복리후생 성격의 경비(BIKs: Benefit-in-kind)(예: 사택, 회사제공 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용의 50% 등). 다만, 회사가 사업장에서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대(캐터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혜택(방호복 및 작업복, 통근교통비, 선원 등에 대한 숙박장소 제공, 특정의 원격지에서 제공되는 현물지급비용,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의 취득 및 유지비용의 50%)는 손금산입
- b. 주주, 사용자 등의 사적 용도의 지출 비용
- c. 사업과 관련없는 선물 및 기부. 단, 이슬람교에 의한 의무 기부금은 예외로 한다.
- d. 각종 준비금(적립금). 단, 은행 및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권예탁협회의(LPS)의 예탁보증 준비금, 광업회사의 준비금, 산림협회 산림준비금, 산업소비진흥협회의 유지 및 폐쇄 준비금은 예외로 한다.
- e. 소득세 납부액
- f. 추정세액 및 과징금 납부액
- g. 이익 배당액
- h. 생명, 건강 및 사고보험의 회사 부담분과 재무부의 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연금펀드(Pension fund)의 회사 부담분. 단, 해당 금액이 종업원의 과세대상 급여로 포함할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
- i. 최종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관련된 비용. 예로 정기에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 j. 면세 대상인 소득과 관련된 비용. 예: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수취배당 목적의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이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 k. 출자금이 주식으로 분할되지 않는 파트너십과 및 협회의 출자자에 대한 급여와 보수

Losses(결손금)

결손금의 이월보존기한은 5년까지 인정된다. 별도로 정한 특정사업 및 특정지역에 투자한 부분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기한은 최고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월 결손의 소급적용은 허용치 않으며, 세금 병합납부도 유효하지 않다.

Profit distributions (배당)

배당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은 아래와 같다.

a. 배당 수익자가 거주자인 경우

개인인 경우 15% 원천세율이 적용되며, 수혜자 개인의 선납 소득세로 취급된다.

법인인 경우도 15% 원천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경우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어 원천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인도네시아 상법상 법인(PT), 소비조합,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경영)하는 법인(BUMN/BUMD)이 다른 인도네시아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세된다.

- 배당이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의해 처분되어야 함
- 투자법인의 지분율이 최소 25% 이상이 되어야 함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배당은 투자법인의 다른 소득과 함께 과세(Ordinary tax)된다. 배당은 PPH23 규정을 통해 15%의 원천세가 적용되며, 이 원천소득세는 투자법인의 선급법인세를 구성하게 된다.

Fimas, commanditaires, 재단(foundations) 및 이와 유사한 조직으로부터 수령되는 배당금은 15%의 원천세가 적용된다. 개인거주자가 수령하는 배당금은 최대 10%의 최종분리과세(Final tax)를 적용받는다.

b. 배당 수익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각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에 준하며(20% 이하의 세율 적용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20% 원천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배당소득세가 확정된다.

Deemed profit margins (인정과세표준율)

아래의 특정사업은 세무당국에서 정한 인정과세 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업종	인정과세 표준율 (매출액 기준)	적용세율
국내 해운회사	4%	1.2%
국내 항공회사	6%	1.8%
국제 해운 및 항공회사	6%	2.64% ¹
석유.가스채굴 영역의 외국기업	15%	3.75% ²
특정 상공부 산하 주제사무소	수출가액의 1%	0.25% ²

¹ 재경부에서 아직 인정과세 표준율에 대한 법령을 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적용세율은 개정 전 세율 30%를 적용하여 계산됨.

² 적용세율은 개정 후 세율 25%를 적용하여 계산됨

Special Industries and activities (특정사업활동)

Upstream Oil, Gas 및 지열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생산물분배계약(PSCs)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해야 한다. 금속(Metal), 광물(mineral) 및 석탄(Coal) 광구와 관련된 특정 기업들은 CoW(Contract of works)에 의해 법인세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 특정 사업활동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율, 공제가능 비용 및 과세소득산정방법 등에 있어서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Tax concessions(세제 우대조치)

Tax neutral-mergers (합병)

기업합병, 결합 또는 기업분할로 인한 자산이전은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이득은 과세되는 반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손실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장부가가격으로 처리한 합병 또는 결합의 경우는 국세청(DGT)의 승인을 전제로 가능하다. 본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합병 및 결합계획(the merger and consolidation plan)이 사업계획테스트(business-purpose test)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한편,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합병계획은 금지되므로 세금손실 분을 합병회사로 이월해서는 안된다.

또한, 상기와 마찬가지로 IPO 계획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기업분할 절차도 국세청 특별 승인이 필요한데, 해당 회사는 1년 내에 국세청(DGT)의 승인을 전제로 증권시장 및 금융감독위원회(BAPEPAM-LK)에 IPO를 위한 등록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의해 최대 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Investment incentives (투자인센티브)

재무부(MOF)를 대표하는 국세청(DGT)은 투자청(BKPM)장의 추천을 전제로 아래 열거한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및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세금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 투자자산을 6년간 양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투자 총액의 30% 상당액 (6년간에 걸쳐 연 5%씩)을 순이익에서 차감
- 세무상의 조기 감가상각
- 결손금의 이월기간을 10년으로 연장
-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10%로 경감

상기에서 언급한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의미한다.

- a. 음식업
- b. 의류 및 섬유
- c. 종이 및 제지
- d. 공업화학원료

- e. 의약업
- f. 고무 및 고무 합성수지업
- g. 철강 및 제강업
- h. 기계 및 장비업
- i. 전자업
- j. 육로 이동 차량 운반구
- k. 선박 건조 및 수리
- l. 시멘트(파푸아, 슬라웨시, 누사똥가라 지역)
- m. 플라스틱 제조 및 포장(자바 이외 지역)
- n. 지질 탐구
- o. 원유 정제
- p. 천연가스 정제

상기 인니투자청(BPKM)장의 추천 절차는 국세청(DGT)의 승인을 받기 전 단계에서 투자 승인 신청을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경제발전통합지구(KAPET)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도 상기와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위한 구체적인 승인은 국세청에 의해 획득되어야 한다. 회사가 보세구역(KB) 지위도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로 인해 향유되는 세제혜택도 포함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부가세 및 사치품 거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생산과 직접 관련있는 자본재와 그 생산설비의 수입 시 발생하는 원천세 (PPh 22)의 면세
- 생산을 위한 자본재, 기기, 물품 및 원재료와 관련된 수입관세의 납부 유예
- 기계와 부품에 대한 4년간 수입관세의 면제

경제발전통합지구(KAPET)의 지정은 대통령 특별령으로 정해지며, 현재 25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Tax cut for public companies (상장기업 세금 감면)

2008년 1월부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은 법인세의 5% 상당의 세액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발행 주식수의 최소 40% 이상이 공개되어야 함
- 발행 주식수의 5% 이내를 소유한 주주가 최소 300명 이상일 것
- 상기 두 가지 요건이 세무연도 중에 최소 6개월(183일) 이상 유지될 것

특정연도에 상기 조건 중 하나 또는 두 가지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Gains resulting from revaluations of fixed assets (고정자산 재평가이익)

국세청 승인을 받은 고정자산 재평가이익은 법인소득세를 10%을 적용하여 최종 분리과세한다. (고정자산 참조)

Foreign loan-funded and foreign grant-funded government projects (해외 Loan 및 정부 발주 프로젝트 해외원조 자금)

해외 Loan 및 정부 발주 프로젝트 해외원조 자금 관련하여 그 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Special tax treatment)을 적용할 수 있다. 적격한 프로젝트는 정부 프로젝트 계획서(DIP) 또는 유사한 문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정부 발주 해외 원조 자금에 대한 주된 계약자(하청업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는 정부에 납세 의무를 지게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2000년 6월 23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차(second-level) 계약자(하청업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에게는 상기 사항이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기 조항 이외에도 주된 계약자(하청업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는 정부 발주 프로젝트 해외원조 자금과 관련된 상품 수입세, 해외 무형자산 및 해외 과세 서비스의 사용에 대하여 아래에 열거한 세금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 수입관세 면제
- 부가세 및 사치품 거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수입소득세의 면제 (PPh 22)

적격한 프로젝트의 제공이 과세대상 재화, 용역서비스인 경우에 주된 계약자(하청업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는 적절한 Tax Invoice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가세는 징수되지 않는다.

적격한 프로젝트가 해외 Loan 또는 해외 원조자금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자금조달이 된 경우에는 세금혜택은 해외 Loan 또는 해외 원조자금 금액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Transfer pricing (이전가격)

관계회사간의 거래에는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 기업이 상기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국세청에서 임의로 정상가격에 기초하여 관계회사간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과세소득과 공제비용을 재계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조세기본법(KUP)에 따르면, 납세자는 관계회사간의 거래가 정상가격에 기초한 것임을 증명하는 이전가격문서(TP documentation)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가격문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중점 조사대상이므로 빈번하게 요청될 수 있다. 2009년 법인소득세 확정신고(CITR)부터는 구체적인 이전가격 문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항목은 다음을 포함한다.

- 관계회사간 거래의 성격 및 금액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그 방법을 적용한 사유
- 회사가 이전가격 문서를 구비하였는지 여부

이전가격 분쟁은 국내 불복 및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되거나, 인도네시아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관계회사간의 거래가 포함된 경우 해당 조세조약의 규정에 근거한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s, MAP)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인니 국세청이 관련 거래의 납세자와 “이전가격 사전합의서(APAs)”를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체결 과정에서 외국 세무당국과의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번 체결된 APA는 특정기간 동안 유효할 것이며, 기간 만료후에는 재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책자 작성 시점 현재 APA 관련 세부 시행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Individual Income Tax (개인소득세)

Normal tax rates (일반 세율)

개인 거주자의 대부분 소득에는 아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Taxable Income	Rate	Tax Rp.
On the first Rp. 50,000,000	5%	2,500,000
On the next Rp. 200,000,000	15%	30,000,000
On the next Rp. 250,000,000	25%	62,500,000
On the next amount of over Rp. 500,000,000	30%	30% of the relevant amount

Concessional tax rates (감면세율)

2009년 11월 16일부터 퇴직금(severance payments), 정부승인 연기금으로 부터 지급되는 정액 연금(lump-sum pension), 정부 사회보장 조직(Jamsostek)으로 부터 지급되는 노후저축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감면세율이 적용된다.

퇴직금 (2년 안에 지급시 최종분리과세)

Taxable Income	Rate	Tax Rp.
On the first Rp. 50,000,000	Nil	Nil
On the second Rp. 50,000,000	5%	2,500,000
On the next Rp. 400,000,000	15%	60,000,000
On the next amount of over Rp. 500,000,000	25%	25% of the relevant amount

정부승인 연기금으로 부터 지급되는 정액 연금(lump-sum pension) 및 정부 사회보장 조직(Jamsostek)으로 부터 지급되는 노후저축 소득 (2년 안에 지급시 최종분리과세)

Taxable Income	Rate	Tax Rp.
On the first Rp. 50,000,000	Nil	Nil
On the next amount of over Rp. 50,000,000	5%	5% of the relevant amount

3차연도부터 지급시에는 최종분리과세가 아닌 소득세법 17조에 따른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Main Personal Relief (소득 공제)

일반 개인거주자에 대한 연간 소득공제금액(PTKP)는 아래와 같다.

구분	Rp.
본인공제	15,840,000
배우자 공제	1,320,000
부양자 공제 (최고 3인까지)	1,320,000
의무관련 공제 (총소득의 5%한도 내, 1개월 최고 Rp500 000)	6,000,000
Jamsostek 노후저축예금의 종업원 부담금 (총소득의 2%)	Full amount
연금기금의 적립금액 (총소득의 5%한도 내, 최고 1개월 Rp 200,000)	2,400,000

Tax residence (세무상 거주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세무상 개인거주자로 간주된다.

- 인니국에 주소를 가진 자
- 12개월 이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인니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회계연도내에 인니국에 체류하고 인니국에 거주할 의도를 가진 자

[주] 인니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협약내의 “거주자” 정의가 우선한다.

개인비거주자의 인니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세가 적용됨. (PPH 26, 조세협약에 따라 다름)(원천징수세 참조)

Registration and filing (세무등록과 신고)

소득공제금액(PTKP)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거주자는 국세청(DGT)에 세무등록을 하고 개인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확정신고 시 급여소득, 투자소득, 자본소득, 해외소득 및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개인의 자산부채 상황도 신고하여야 한다.

가족은 일반적으로 가장의 세무등록번호(NPWP)를 사용하는 단일 신고대상으로 간주되며, 이럴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가족의 소득이 PPH 21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가장의 소득과 함께 과세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Tax payments (납세방법)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기타보상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PPH 21 및 26)하여야 한다. 종업원이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조세협약에 따라 더 낮을 수도 있음)

개인에게 지불되는 다음의 여러가지 소득에 대하여 지급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 정부 승인 연기금으로부터의 지급되는 연금(Pension)
- 퇴직금
- Jamsostek으로 부터 지급되는 노후저축 소득
- 장학금
- 서비스 수수료
- 상금

상기 소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나, 자영업자 및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건축사, 의사, 손해사정인, 감정사와 같은 전문직종에 대한 서비스료는 특별히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퇴직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종업원 개인의 소득이 되며, “퇴직금관리조직”이 은행인 경우는 20%의 원천세 분리과세, 은행 이외의 경우에는 PPH 23 에 따른 15%의 원천세 과세대상이 된다.

Exit tax (출국세)

세무등록번호(NPWP)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거주자는 출국세가 면제되며 Kartu Keluarga(인도네시아인) 또는 SKSKP(외국인)과 같은 공식적인 가족증명서에 포함된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도 적용된다.

세무등록번호(NPWP)가 없는 개인거주자에게는 2010 년말까지 출국세가 계속 적용될 것이며 외국으로 출국할 때 부과된다.

납부된 출국세는 해당자가 세무등록번호(NPWP)를 취득할 때 환급될 수 있으며, 출국세 납부한 해의 개인소득세 신고(Form 1770)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Mode of trip	Exit tax (Rp)
By air	2,500,000
By sea	1,000,000
By land	-

Benefits-in-kind (현물 및 시설 제공)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주택, 교육, 휴가 및 세금보상 등의 BIK는 종업원의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즉, 관련 비용은 법인소득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처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방호복, 근무복, 출퇴근 교통비, 선원 등에 대한 숙박시설 제공 및 오지에 지급하는 현물 및 시설제공분도 BIK로 간주된다.

그러나, BIK가 아래의 회사 등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이는 종업원 개인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 1984년이전 소득세법 적용을 받는 광물(Mining)회사 및 석유가스회사(PSC)
- 법인세 납부주체가 아닌 해외법인의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
- 최종 분리과세 대상기업(Final-taxed companies)
- 인정과세 대상기업(Deemed-profit companies)

Jamsostek-social security (사회보장제도)

인도네시아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없으나, 질병, 입원 뿐만 아니라 산재, 사망 및 노후(55 세)의 경우 보상해 주는 “노동자 사회보장 프로그램(Jamsostek)”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영기업인 PT.Jamsostek에서 관리되며, 보험료율(급여 및 임금 대비)은 다음과 같다.

Areas covered	보험료율(급여 및 임금 대비)	
	회사 부담분	종업원 부담분
상해보상	0.24-1.74%	-
사망보험	0.3%	-
노후저축	3.7%	2%
의료보험*	3%	-

*)최대 기혼자의 경우 매월 Rp 60,000, 독신자의 경우 Rp 30,000

회사는 종업원이 Jamsostek 에 가입하게 할 책임이 있으며, 종업원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되어 회사부담금과 함께 PT. Jamsostek에 납부되어야 한다.

외국인은 본국에 Jamsostek 같은 형태의 사회보장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한다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보다 나은 의료보험을 제공한다면 Jamsostek 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Deemed salaries (인정과세소득)

석유가스기업(Oil & Gas drilling companies)에 근무하는 외국인 종업원은 특정 보상금액을 받는다고 간주되어지며 직책별 인정과세소득은 다음과 같다.

직책	US\$ per month (gross before tax)
General managers	11,275
Managers	9,350
Supervisors and tool pushers	5,830
Assistant tool pushers	4,510
Other crew	3,245

인정과세소득은 BIK 를 포함한 근로에 대한 모든 보상(Compensation)이 고려된 것으로 본다.

Withholding Taxes (원천징수세)

General

인도네시아 소득세는 주로 원천세 형태로 징수되며, 원천세 적용을 받는 특정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불주체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각종 원천세는 소득세법(PPH)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구분된다.

(i) Article 21 income tax (급여에 대한 소득세)

회사는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며, 종업원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등 원천세는 컨설턴트 또는 용역제공자와 같은 종업원이 아닌 개인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인소득세 참조 - 일반세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세무등록번호(NPWP)가 없는 개인 거주자는 표준세율에 20%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ii) Article 22 income tax (수입과 특정물품 거래에 대한 소득세)

제22조는 다음의 경우 적용된다.

- 수입품
- 정부국고 또는 국영기업이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의 판매
- 철강, 자동차, 담배, 시멘트, 종이제품 및 사치품의 판매 및 구매

Event	Tax rate	Tax base
(1) 수입품 (수입라이선스 보유)	2.5%	수입액 (ex: CIF+수입관세)
(2) 수입품 (수입라이선스 미보유)	7.5%	수입액 (ex: CIF+수입관세)
(3) 정부국고 및 국영기업이 지불하는 상품판매	1.5%	거래가격
(4) 철강제품 구매	0.30%	거래가격
(5) 자동차 구매	0.45%	거래가격
(6) 종이제품 구매	0.10%	거래가격
(7) 시멘트 구매	0.25%	거래가격
(8) 사치품 구매	5%	거래가격

Notes:

1. 동 세금은 다음 수입품의 경우 자동적으로 또는 원천세 면세 증명서를 취득하면 징수되지 않음
 - 수입관세 및 부가세 면세 물품
 - 재수출품과 같은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 재수입을 위한 물품
2. (3)의 정부 및 국영기업은 특정 공급업체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며, 물품수입업자 또는 구매자는 물품가액은 물론 제 22 조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함
3. (3)의 국영기업은 PT Telkom, Pertamina, Bulog, Bank Indonesia, PLN, PT Indosat, PT Garuda Indonesia, PT Karakatau Steel 및 국영은행을 말함
4. (4)~(8)의 물품 공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해졌다면 구매자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함
5. 제 22 조의 원천세는 (1)~(8)의 당사자에게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선납하는 결과를 초래
6. 면세는 특정품목 또는 비영리목적으로 수입 및 구매되는 품목에 적용

세무등록번호(NPWP)가 없는 경우 기본세율에 100%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iii) Article 4(2) – final income tax (최종분리과세 성격의 소득세)

국내법인, 고정사업장, 외국기업의 대표사무소, 단체 및 지정된 개인은 다른 거주자 및 고정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지불이 발생할 경우 원천징수해야 한다.

Description	Tax rate
(1) 토지건물 임대료	10%
(2) 토지건물 권리이전에 따른 이익	5/1%
(3) 건설 시공비	2/3/4%
(4) 건설 설계비	4/6%
(5) 건설 감리비	4/6%
(6) 예금 이자	20%
(7) 채권 이자	15% ¹
(8) 주식매각 *창업자는 상장시 시가의 0.5%를 납부하거나 매각하는 시점의 이익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따른 세금납부 선택가능 (특정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 가능)	0.1%
(9) 복권당첨금	25%
(10) 선물계약, 파생상품	2.5% ²

Notes:

¹ 수령자가 자본시장감독위원회(BAPEPAM)에 등록된 뮤추얼펀드라면 세율은 2009~2010 기간은 0%, 2010~2013년까지 5%, 이후는 15%의 세율이 적용됨. 수령자가 비거주자라면 20% 또는 조세협약에 따른 저세율을 적용함

² " initial margin"에도 적용가능함

(iv) Article 23 income tax (거주자간 거래이익에 대한 소득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 중 다음의 경우에는 PPH23에 근거하여 지불 총액의 15% 또는 2%의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a. 15% 적용대상

1. 배당 (법인소득세 참조 - 이익분배)
2.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스왑프리미엄 및 보증료를 포함한 이자
3. 로열티
4. 포상금 및 상금

b. 2% 적용대상

1. 토지 및 빌딩 등의 자산 렌탈
2. 기술서비스
3. 경영서비스
4. 자문서비스
5. 평가서비스
6. 감정서비스
7. 회계, 기장 및 증명서비스
8. 디자인 서비스
9. 시추서비스(고정사업장 수행 제외)
10. 석유가스채취관련 지원서비스
11. 광물서비스
12. 항공운송서비스
13. 삼림채벌
14. 폐기물처리 서비스
15. 인력공급/아웃소싱
16. 중개서비스
17. 증권거래서비스(Stock Exchange, KSEI, KPEI 제외)
18. 플랫폼서비스
19. 플랫폼싱 서비스
20.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련서비스
21. 설치용역서비스(건설업라이센스 있는 건설회사가 하는 경우 제외)
22. 유지보수서비스(건설업라이센스 있는 건설회사가 하는 경우 제외)
23. 위탁제조서비스
24. 보안검사 서비스
25. 이벤트조직 서비스
26. 패키지 서비스
27. 정보전파를 위해 미디어 등에 장소나 시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28. 해충구제서비스
29. 청소서비스
30. 케터링 서비스

- (v) **Article 26 – Non-residents(비거주자가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거주자, 단체 및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가 비거주자에게 지불하는 다음의 항목에는 20%의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a. 총액기준

1. 배당
2.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프리미엄 및 보증료를 포함한 이자
3. 로열티, 임차료 및 자산사용에 대한 지불
4. 각종 서비스료
5. 포상금 및 상금
6. 연금 및 기타 정기적 지불
7. 스왑프리미엄 및 기타 헷지거래
8. 채무면제이익
9.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의 세후수익

- b. 인정과세표준(Estimated Net Income, ENI)에 총액기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구 분	과세표준 (ENI, %)	적용세율 (총액기준)
해외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보험료:		
개인피보험자의 보험료	50%	10%
인니국 보험사의 보험료	10%	2%
인니국 보험사의 재보험료	5%	1%
비거주자의 비상장 회사주식 매각	25%	5%
도관회사(Conduit company, 인니 회사주식 보유 중개)의 주식매각	25%	5%

수혜자가 인도네시아와 조세협약을 맺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원천세율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조세협약 참조)

Tax Treaties (조세 협약)

인도네시아 조세협약은 사용료 수익(Service fee)에 대한 원천세 면제(Exemption) 및 인도네시아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에 의해 수령되는 배당, 이자수입, 로열티, 지점이익에 대한 원천세 감면(Reduction)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용료 수익에 대한 면제 규정은 수혜 당사자가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감면 세율(Reduced rate)을 적용받기 위해서 해외 거주자(Foreign party)는 최소한 국제청(DGT)에 거주자증명원(Certificate of Residence, CoR)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관련 소득을 지급하는 인니 거주자(Indonesian party)를 통해 이루어지면 된다. 해당 증명원 (ITO 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한함) 미제출시에는 세무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20%의 원천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자수익, 배당금, 로열티의 경우에는 단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만이 조세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당사자로 인정된다. 2009년 11월에 국제청에 의해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개인 (대리인으로서 소득을 수취하지 않아야 함)
- b. 조세조약에 명시된 기관, 혹은 인도네시아와 상대방 조세조약국가의 공정위에 의해 인정된 기관
- c. Offshore company(WPLN)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나 채권의 거래로부터 소득을 수취하는 회사로서, 대리인으로서 소득을 수취하지 않아야 함)
- d.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회사
- e. 은행
- f. 기타 다음사항을 충족하는 회사
 1. 조세조약국에서 회사의 설립 및 거래구조가 단순조세 회피목적이 아니며, 거래를 수행할 권한이 충분한 회사의 경영진에 의해 경영활동이 이루어질 것
 2.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경영활동이 있거나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할 것
 4. 인도네시아 소득이 수취국에서 과세 대상일 것
 5. 다른 회사에 대해 이자, 로열티 및 기타 지급 등의 의무이행을 위해 총수입의 50% 이상을 지출하지 않을 것

조세협약상 주요 국가별 원천징수세율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Notes	Dividens		Interest	Royalties	Branch Profit Tax
		Portfolio	Substantial holdings			
1. Algeria		15%	15%	15/0%	15%	10%
2. Australia		15%	15%	10/0%	15/10%	15%
3. Austria		15%	10%	10/0%	10%	12%
4. Bangladesh		15%	10%	10/0%	10%	10%
5. Belgium		15%	10%	10/0%	10%	10%
6. Brunei		15%	15%	15/0%	15%	10%
7. Bulgaria		15%	15%	10/0%	10%	15%
8. Canada		15%	10%	10/0%	10%	15%
9. China		10%	10%	10/0%	10%	10%
10. Czech Republic		15%	10%	12.5/0%	12.5%	12.5%
11. Denmark		20%	10%	10/0%	15%	15%
12. Egypt		15%	15%	15/0%	15%	15%
13. Finland		15%	10%	10/0%	15/10%	15%
14. France		15%	10%	15/10/0%	10%	10%
15. Germany	1	15%	10%	10/0%	15/10%	10%
16. Hong Kong	6	10%	5%	10%	5%	5%
17. Hungary	3,4	15%	15%	15/0%	15%	20%
18. India		15%	10%	10/0%	15%	10%
19. Iran	7	7%	7%	10/0%	12%	7%
20. Italy		15%	10%	10/0%	15/10%	12%
21. Japan		15%	10%	10/0%	10%	10%
22. Jordan	3	10%	10%	10/0%	10%	20%
23. Korea (North)		10%	10%	10/0%	10%	10%

	Notes	Dividens		Interest	Royalties	Branch Profit Tax
		Portfolio	Substantial holdings			
24. Korea (South)	2	15%	10%	10/0%	15%	10%
25. Kuwait	4	10%	10%	5/0%	20%	10/0%
26. Luxembourg	1	15%	10%	10/0%	12.5%	10%
27. Malaysia	5	15%	15%	15/0%	15%	12.5%
28. Mexico		10%	10%	10/0%	10%	10%
29. Mongolia		10%	10%	10/0%	10%	10%
30. Netherlands		10%	10%	10/0%	10%	10%
31. New Zealand	3	15%	15%	10/0%	15%	20%
32. Norway		15%	15%	10/0%	15/10%	15%
33. Pakistan	1	15%	10%	15/0%	15%	10%
34. Papua New Guinea	7	20%	15%	15/10/0%	15%	20%
35. Philippines		20%	15%	15/10/0%	15%	20%
36. Poland		15%	10%	10/0%	15%	10%
37. Portuguese		10%	10%	10/0%	15%	10%
38. Qatar		10%	10%	10%	5%	10%
39. Romania		15%	12.5%	12.5/0%	15/12.5%	12.5%
40. Russia		15%	15%	15/0%	15%	12.5%
41. Seychelles		10%	10%	10/0%	10%	20%
42. Singapore		15%	10%	10/0%	15%	15%
43. Slovakia		10%	10%	10/0%	15/10%	10%
44. South Africa	3,4	15%	10%	10/0%	10%	20%
45. Spain		15%	10%	10/0%	10%	10%
46. Sri Lanka	3	15%	15%	15/0%	15%	20%
47. Sudan		10%	10%	15/0%	10%	10%

	Notes	Dividends		Interest	Royalties	Branch Profit Tax
		Portfolio	Substantial holdings			
48. Sweden		15%	10%	10/0%	15/10%	15%
49. Switzerland	1	15%	10%	10/0%	10%	10%
50. Syria		10%	10%	10%	20/15%	10%
51. Taiwan		10%	10%	10/0%	10%	5%
52. Thailand		20%	15%	15%	15%	20%
53. Tunisia		12%	12%	12/0%	15%	12%
54. Turkey		15%	10%	10/0%	10%	10%
55. Ukraine		15%	10%	10/0%	10%	10%
56. United Arab Emirates		10%	10%	5/0%	5%	5%
57. United Kingdom		15%	10%	10/0%	15/10%	10%
58. United States		15%	10%	10/0%	10/0%	10%
59. Uzbekistan		10%	10%	10/0%	10/0%	10%
60. Venezuela		15%	10%	10/0%	20/10%	10%
61. Vietnam		15%	15%	15/0%	15%	10%

Notes:

1.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파키스탄에 고정사업장을 둔 일방이 인도네시아에서 제공함
기술지원료, 경영지원료, 컨설팅서비스는 각각 5%, 7.5%, 10%(또는 15%)의 원천세율이 적용됨
2. 국제 선박/항공 활동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세 상호 면제됨
3. 지점수익세에 대한 조세협약상 명시가 없어 인니 과세당국은 해당국가의 경우 인니세법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4. 과실송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5. 아직 효력 발효 전이나 조약이 비준되어 비준문서가 교환될 경우, Labuan은 조세협약 기준으로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 적용될 예정이며 지급이자, 배당금,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율은 10%로 적용될 것임
6. 조약이 비준되어 비준문서가 교환될 경우에 한함
7. 조세협약의 효력 발효 전이며, 비준되었으나 비준서류의 상호 교환이 보류되어 있음.

Permanent establishment time test (고정사업장의 기간적용 기준)

인도네시아내에서 특정기간을 초과하여 특정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음 표는 관련 조세협약에 규정된 특정활동에 대한 특정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Bidg. Site Construction	Installation	Assembly	Supervisory Activities	Other Services
1. Algeria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2. Australia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3. Austr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4. Bangladesh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91 days
5. Belgium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
6. Brunei	183 days	3 months	3 months	183 days	3 months
7. Bulgar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20 days
8. Canada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9. Chin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0. Czech Republic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11. Denmark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12. Egypt	6 months	4 months	4 months	6 months	3 months
13. Finland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14. France	6 months	---	6 months	183 days	183 days
15. Germany	6 months	6 months	---	---	---
16. Honkong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17. Hungary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4 months
18. India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91 days
19. Ira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20. Italy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21. Japan	6 months	6 months	---	6 months	---
22. Jorda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 months
23. Korea (North)	12 months	12 months	12 months	12 months	6 months

	Bldg. Site Construction	Installation	Assembly	Supervisory Activities	Other Services
24. Korea (South)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25. Kuwait	3 months	3 months	3 months	5 months	3 months
26. Luxembourg	5 months	5 months	5 months	---	---
27. Malays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28. Mexico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91 days
29. Mongol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30. Netherland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31. New Zealand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32. Norway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33. Pakistan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
34. Papua New Guinea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35. Philippines	6 months	3 months	3 months	6 months	183 days
36. Poland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120 days
37. Portuguese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38. Qatar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9. Roman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4 months
40. Russia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
41. Seychelle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42. Singapore	183 days	183 days	183 days	---	90 days
43. Slovak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91 days
44. South Afric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20 days
45. Spain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3 months
46. Sri Lanka	90 days	90 days	90 days	90 days	90 days
47. Suda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48. Swede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49. Switzerland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
50. Syr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Bldg. Site Construction	Installation	Assembly	Supervisory Activities	Other Services
51. Taiwa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20 days
52. Thailand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53. Tunisia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54. Turkey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55. Ukraine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4 months
56. United Arab Emirate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57. United Kingdom	6 months	183 days	183 days	183 days	91 days
58. United States	183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59. Uzbekistan	120 day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60. Venezuel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
61. Vietnam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Capital Allowances (고정자산)

Depreciation (감가상각)

1년 이상의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취득월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상각방법은 정율법과 정액법을 적용할 수 있고 한번 적용된 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Category 1 - 50% (정율법) or 25% (정액법) 내용연수 4년인 자산 :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가구 및 목재 비품, 사무실 비품, 오토바이, 특수 산업/서비스용 특수공기구, 주방기구, 농어업용 수동도구, 식품업산업용 경량기계, 공공운송업용 차량, 반도체 산업용 도구, 심해정박 장비 렌탈용 기구비품, 휴대전화 기지국 장비.

Category 2 - 25% (정율법) or 12.5% (정액법) 내용연수 8년인 자산 : 금속가구 및 도구, 에어컨, 승용차, 버스, 트럭, 스피드 보트, 컨테이너 등, 농어업용/식품용 기계, 경량기계, 벌목기구, 건축용 도구, 운송/창고용 중장비, 통신용 도구, 반도체 산업용 도구, 심해정박 장비 렌탈용 기구비품, 휴대전화서비스용 공구.

Category 3 - 12.5% (정율법) or 6.25% (정액법) 내용연수 16년인 자산 : 일반 광산업용 기계(오일, 가스 제외), 봉제/목재/화학공장/기계제작 사업용 기계, 운송/통신용 중장비, 부두설비 및 선박, 기타 타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Category 4 - 10% (정율법) or 5% (정액법) 내용연수 20년인 자산 : 건설용 중장비 기계, 기관차, 철도운송도구, 대형선박, 부두.

Building category - 5% (정액법) 내용연수 20년인 상설건물 또는 10% (정액법) 내용연수 10년인 비상설 건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취득세 *BPHTB* 포함)

상기 각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보다 구체적인 자산의 내역은 재무부장관령(MoF regulation)에 규정되어 있으며, 오일/가스산업 자산의 세부 자산별 감가상각을 역시 재무부장관령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특정 산업을 위한 특정 지역이나 경제발전통합지구 (KAPET)에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건물사용권, 상업사용권, 토지건물사용권 등의 기한 연장비용을 포함)에는 다음 상각방법이 적용된다.

a.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의 카테고리 1,2,3,4에 표시된 비율의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상각함.

- Category 1: 4 년
- Category 2: 8 년
- Category 3: 16 년
- Category 4: 20 년

카테고리는 가장 근접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예: 내용연수가 6년인 무형자산은 카테고리 1 또는 2, 내용연수가 5년인 무형자산은 카테고리 1을 적용)

b. 창업(법인설립)비 및 증자 관련비용은 지출이 발생한 시점에 전액 손금처리 또는 아래 카테고리별 비율로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상각함.

- 카테고리 1 : 정률법 50%, 정액법 25%
- 카테고리 2 : 정률법 25%, 정액법 12.5%
- 카테고리 3 : 정률법 12.5%, 정액법 6.25%
- 카테고리 4 : 정률법 10%, 정액법 5%

c. 1년 이상의 경제적 내용연수(beneficial life)가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권 취득 비용은 생산량 비례법(Production-unit method)에 의거 상각함.

d. 1년 이상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는 광업권(mining rights), 벌목권(forest concessions) 및 기타 천연자원 개발권(other rights to exploit natural resources and natural products)도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함. 다만, 연도별 상각비는 총액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됨.

e. 상업활동 개시 이전의 비용으로서 경제적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기 b 기준에 의거 상각처리 함.

Asset transfers (자산 이전)

회사의 자산(토지 및 건물 제외)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차손익(매각가-세무상 장부가)이 발생한다. 양도차익은 당면 과세대상이나, 양도차손은 해당자산이 사업활동(running of the business)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만 세무상 공제가 가능하다.

Revaluation of fixed assets (고정자산 재평가)

루피가 장부기장을 하는 회사 및 고정사업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세무상 목적으로 비유동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다. 자산재평가는 매 5년마다

가능하며, 인도네시아 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 관련자산(건물, 토지는 제외 가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자산재평가 신청 전 모든 미납세금은 정리되어야 한다.

재평가는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가치는 정부가 승인한 평가법인에 의해 산정되어야 한다. 국세청장(DGT)은 해당 금액이 자산의 시장 또는 공정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국세청장의 승인이 완료되면, 감가상각은 새로운 세무상 자산가치에 대해 신규자산 취득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기존 장부상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재평가차액, 공정가치 - 세무상 장부가액)은 10%의 세율로 최종 분리과세되며 국세청장의 승인하에 12개월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재평가 후 카테고리 1,2에 포함되는 자산은 최소한 각각의 내용연수가 종료할 때 까지는 처분 또는 양도되지 않아야 한다. 토지, 건물 및 카테고리 3,4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소한 재평가일로부터 10년 동안은 처분 또는 양도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해당기간 내에 처분/양도시에는 최초 재평가차액에 추가로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분리과세된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자산 양도, 비과세(Tax-neutral) 사업합병, 결합 또는 사업분할 등 과정에서의 자산 양도, 회복불능 손상으로 인한 자산의 처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General (개요)

부가가치세는 개정되었으며, 개정의 효력은 2010년 4월 1일부터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과세지역(Customs area) 내에서 과세대상 재화(goods)의 이동 및 과세대상 용역(services)의 제공과 관련있는 사건(events)에 부과하는 것이다.

과세대상의 사건(taxable events)은 다음과 같다.

- 과세지역 내에서의 사업목적(by an enterprise)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
- 과세대상 재화의 수입
- 과세지역 내에서의 과세대상 용역의 양도
- 과세지역 내에서의 과세지역 밖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무형(Intangible) 재화의 사용 및 소비
- 과세지역 내에서의 과세지역 밖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용역의 사용 및 소비
- 사업목적(by an enterprise) 과세대상 유무형재화의 수출
- 사업목적(by an enterprise) 과세대상 용역의 수출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는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나,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계약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의 권리의 양도
-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 계약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
- 중개상이나 경매관에 대한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
- 과세대상 재화의 자가소비 또는 무상제공
- 법인 청산시 잔존하는 재고자산 형태의 과세대상 재화와 특정자산(당초 판매 목적이 아니었던 경우)
- 본지점 또는 지점간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국세청장 승인하에 통합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위탁품(Goods on consignment)의 양도
- 이슬람금융(Syariah-based financing) 구조하의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

Tax rates and tax base (세율과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10%이며, 정부 규정(regulation)에 의하여 최저 5%, 최고 15%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대상 유무형재화의 수출 및 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세율은 0%로 고정되어 있다.

특정 과세대상 사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과세표준은 거래 당사자간 합의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래 사항을 포함한 특정사건이나 상황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아닌 다른 기준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a. 관계사간 거래, 법인 청산시 잔존하는 과세대상 재화, 당초 판매목적이 아닌 재화의 판매의 경우는 시장가치
- b. 자가소비 또는 과세대상 재화의 내부 이전(예, 지점간 또는 본지점간)의 경우 매출원가
- c. 경매관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의 경우 경매(낙찰)가격
- d. 중개상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의 경우 합의된 가격
- e. 팩토링서비스의 경우 수수료 및 할인료 합계액의 5%
- f. 비디오 및 오디오 녹화 제품의 경우 평균 판매가격
- g. 영화의 경우 필름당 평균 관람료
- h. 자가건설 건물의 경우 토지 구입가를 제외한 총 건설원가의 4%
- i. 담배 제품의 수입, 양도의 경우에는 소매판매 가격
- j. 포장 선적 서비스, 여행 및 여행 대행업의 경우 실제 청구금액의 10%

다음과 같이 법령의 의해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화와 용역은 과세 대상이다

Non-taxable Goods

- a. 자연 상태에서 직접 채굴된 광물이나 탐사물 (예, Crude oil, 천연가스, 지열 에너지, 모래 및 자갈, 석탄(조각으로 가공되기 이전 상태), 철광, 구리광, 금광, 은광, 알루미늄광)
- b. 기초생활필수품 (예: 쌀, 소금, 옥수수, 녹말가루, 간장, 콩)
- c. 호텔, 식당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이나 음료 등으로 객장에서 소비되거나 take-away되는 것을 포함함
- d. 화폐, 금괴, 유가증권

Non-taxable Services

- a. 의료 서비스
- b. 사회복지 (예: 고아원, 장례식장 서비스)
- c. 우표를 사용한 우편 서비스
- d. 금융 서비스
- e. 보험 서비스
- f. 종교 서비스
- g. 교육 서비스
- h. 예술 및 공연 서비스
- i. 광고에 활용되지 않는 방송 서비스
- j. 육상, 해상, 국제항공 대중교통
- k. 인력용역 서비스
- l. 호텔 서비스
- m.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 n. 주차 서비스

VAT reporting (부가세 신고)

과세사업자(Pengusaha Kena Pajak/PKP)로 지정된 회사나 개인은 매월 사업활동을 보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장별로 계산되며, 결과적으로 여러 사업장(branches)을 소유한 기업은 각각의 사업장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관할세무서(KPP)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내 과세재화의 내부 이전의 경우에도 부가세를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1일부터 회사는 세무당국(DGT)에 서면 신고함으로써, 부가세 신고를 총괄하여 할 수 있다. (내부 재화의 공급을 제외하고 신고 가능)

또한, 특정 Tax service offices(KPP PMA, KPP Badora, KPP Go Public, LTO, and MTO tax offices)에 등록된 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세 총괄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매입-매출 구조에 따라 정산한다. 판매자는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며, 판매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매출 부가세이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매입 부가세이다. 해당 재화가 구매자의 사업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러한 매입세액은 매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시 지불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만일 같은 기간에 총 매출세액이 총매입세액을 초과한다면 납세자는 해당 차액을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총매입세액이 총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월별로 환급을 요청하거나 다음달 납부할 금액에서 이월공제 할 수 있다.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와 외국의 과세대상 서비스 및 무형자산의 소비에 적용되는 자가평가(self-assessed) 부가가치세 역시 표준 매입-매출 정산 메커니즘을 적용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인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는 인도네시아의 매입자/수입자에게 부가가치세 invoice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매입자/수입자는 비거주자 판매자 또는 용역제공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매입/수입된 재화 또는 용역이 매입/수입자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매입부가세(수입부가세와 자가평가부가세)는 매출부가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징수원(VAT Collector)에게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에는 이러한 표준 매입-매출 정산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징수원은 재무부(State Treasury)나 PSC(Pertamina 포함)가 될 수 있다.

* 2010년 4월 1일부터 납부는 신고기한 전까지이며, 신고기한은 다음달 말일까지임

Input-output mechanism (매입세액-매출세액 매커니즘)

명칭 그대로 부가가치세 징수원은 재화와 용역의 제공시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공급자 대신 정부에 직접 부가가치세 지불을 대신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징수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회사는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 환급 position 이 발생하게 된다.

Crediting input VAT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는 월별로 DGT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특정 과세기간(월)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대응되어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이 아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세무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월) 종료 후 3개월 기간내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개개의 세금 계산서의 유효성은 매입세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세금계산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이름,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Tax ID)
-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자의 이름,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Tax ID)
- 재화와 용역의 내용(type), 수량, 공급가액(sales price or compensation)과 할인액
- 부가가치세 금액
- 사치세(tax on luxury goods) 금액
- 코드, 일련번호(serial number), 계산서 발행 일자
- 권한있는 서명권자의 이름, 직급, 사인

상기 최소한의 정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다음의 기간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
-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 이전에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그 지급을 받은 시점
- 단계별로 업무를 제공할 경우 계약에 따른 해당금액 지급 시점
- 재무부에서 정하는 기타 특수한 경우

VAT refunds (부가세 환급)

매 회계연도말에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세무당국(DGT)은 환급 신청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부가세 세무조사를 근거로 환급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2개월안에 결정되지 못하면 신청서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 후에 제출한 서류는 부가가치세 환급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성실납세자(Golden taxpayer)로 분류된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자격이 부여된다. 성실납세자 지정은 세무당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에는 신고기한 내에 적절히 신고를 하였을 것, 체납이나 범죄사실이 없을 것 등이 포함된다. DGT는 이러한 규정에 기초하여 매년 성실납세자를 지정하며,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납세자는 조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러한 특전 적용을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문서를 통해 DGT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환급 신청서가 접수된 후 1개월 안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무당국은 조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승인한 후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과다 환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금액의 100%가 일반가산세로 부과된다.

특정 납세자(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자, 부가세 징수자에게 공급하는 자, 제조 이전단계의 회사, 부가세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는 매월 환급이 가능하다.

Tax facilities (세무 편익)

정부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비징수나 면세의 형태로 세무편익이 부여된다. 이러한 편익은 아래의 형태로 부여된다.

Bonded zones (보세구역)

보세구역 (*Kawasan Berikat/KB*)은 일반적으로 수출 제조회사의 요청에 의해 재무부(MoF)가 승인한다. 이는 수출활동의 승인지연 등으로 인해 매입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환급 지연으로 인한 유휴 투자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세구역은 세목과 같이 부가가치세 비징수와 부가가치세 면세가 주어진다.

- 추가가공이 요구되는 수입품 또는 국내 구입 재화
- 보세구역 내 회사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사무실 집기
- 보세구역 내에서 또는 보세구역 내 회사와 관련한 제조활동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된 플랜트 설비 및 기계장치

보세구역회사와 그 회사의 하청업자 사이 뿐만 아니라 보세구역 회사간의 재화의 거래 역시 동일한 세무편익이 부여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음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징수되지 않는다.

- 추가 가공을 위하여 보세구역회사로부터 다른 보세구역회사로의 생산품의 출하

- 하청계약에 의해 Customs Area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세구역회사로부터 비보세구역 회사로의 자재나 제품의 출하, 또한 비보세구역 회사로부터 보세구역 회사로의 재출하
- Customs Area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세구역회사로부터 다른 보세구역회사 및 비보세구역회사로의 Plant, 기계 및 장비의 대여, 또한 하청계약에 의한 보세구역 회사로 동일 기계나 장비의 재출하

위와 같은 조건과는 별도로, 역의 Customs Area로부터 보세구역회사로의 제품 출하는 추가 가공이 이루어지는 범위내에서 수입관세 및 소비세가 유예된다.

수입소득세(PPH22)는 제조활동에 직접 관련된 사무실 장비, 기계장치, 설비와 추가 가공을 위한 제품의 수입시에는 징수되지 않는다.

회사는 보세구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시장의 비보세구역회사에게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의 최대한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국내판매는 다음의 최대 한도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 추가 가공을 요구하지 않고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의 연간 생산금액의 50%
- 기타 재화의 경우 연간 생산금액의 60%
- 광산과 오일 및 가스 회사에 공급되는 제품은 연간 생산금액의 75%
- 오일 및 가스, 국내 조선, Oleo 화학산업에 종사하는 보세구역회사에 공급하는것은 연간 생산금액의 75%

상기 국내 판매량이 주어진 상황에서 당해년도 한도를 초과하는부분(portion)은

- 수출
- 다른 보세구역회사로의 선적
- 추가 가공을 위한 특별수입편익구역(KITE: Special import facility)으로의 이동 또는, 관세청(DGCE: Director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의 감독하에 폐기되어야 함.

Special Import Facility (특별 수입 편익)

보세구역 대신에 수출제조업체는 관세청(DGCE)로부터 특별수입편익(KITE)을 요구할 수 있다. 보세구역 편익과 달리 특별수입편익은 추가가공, 조립 또는 추가 수출을 위해 타 재화에 첨부할 목적의 수입시에만 적용된다. 편익은 아래 내용과 같다.

- 관세 및 소비세 유예

- 부가가치세와 사치세 비징수

KITE를 취득하려면 회사는 먼저 DGCE로부터 회사의 소유주 번호(NIPER)를 획득해야 한다. 이후 특별수입편의를 매년 요청할 수 있으며, 과거 12개월의 수출실적 보고서(Export Realization Report)와 향후 12개월의 수입, 수출계획(Import and Export Plan for the Next 12 Months)을 제출하여야 한다. DGCE는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편의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요청에 승인을 받으면 회사는 수입제품의 개봉 전에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비징수분과 관세와 소비세의 면세분 만큼의 은행 담보(bank guarantee)나 보증서(promissory note)를 DGCE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KITE의 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보세구역회사에 수출이나 판매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치 않으면 DGCE와 DGT는 전에 면제된 제품의 관세와 소비세 그리고 비징수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재징수와 함께 행정상의 벌칙이 적용된다. (수입관세의100%와 미지불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최대 24개월까지 매월2%의 이자)

Foreign-Grant or Foreign-Loan-Funded Governmental Projects (해외보조금이나 해외 차관자금의 정부 프로젝트)

해외보조금이나 해외 차관자금의 정부 프로젝트(Foreign-Grant or Foreign-Loan-Funded Governmental Projects)와 관련한 재화의 수입이나, 해외 과세대상 서비스 및 해외 무형자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주계약자, 컨설턴트,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사치세 및 수입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전략적 재화로 지정된 과세대상 물품의 수입과 양도거래는 VAT가 면제된다. 이 전략적 물품의 지정은 정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현재 다음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

- 과대재화의 제조를 위하여 요구되는 기계, 플랜트 및 설비 형태의 자본재
- 농업, 농장, 산림생산품, 축산생산품, 사냥포획물, 수산업생산품 및 양식품
- 전기료, 단 6,600와트를 초과전력으로 필요로하는 고급주택 경우는 제외
- 상수도 또는 음료수 파이프에 따라 공급되는 음료
- 소, 닭(가금류), 어류의 사육 및 그 원료
- 농업, 농장, 산림, 낙농업용에 활용되는 종자, 씨앗류

Other VAT Exemption Schemes (기타 부가세 면제 개요)

특정한 국가적 목적을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과세대상 재화 및 서비스의 양도나 수입은 면세된다.

- 군대나 경찰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기, 탄약, 군함차량
- 법정예방접종용의 소아예방 백신
- 일반교육 및 종교관련 서적

- d. 국영 선박 및 어업회사의 선박과 부품류
- e. 국영 항공회사의 항공기 및 부품류
- f. PT.Kereta Api Indonesia사에 의한 철도차량과 부품류
- g. 저가격의 가옥, 학생용 주거
- h. PT.Kereta Api Indonesia사에 의한 철도차량의 유지와 수선 서비스
- i. 선박의 임대, 항만, 선박유지를 포함하는 국영 선박 및 어업 서비스
- j. 항공기의 임대 및 유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국영 항공회사 서비스
- k. 저가격의 가옥, 종교상 예배목적 건물의 건설에 관한 서비스
- l. 저가격 가옥의 임대

VAT and LST in Batam (바탐의 부가세와 특별소비세)

바탐은 현재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로서, 바탐지역내의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공급에 대해 일반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Batam, Bintan 및 Karimun에 대한 자유무역지대 부분 참조.

Luxury Sales Tax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VAT)와 더불어 특정 과세물품의 수입 또는 유통에 특별소비세(LST)가 부과될 수 있으나, LST는 제품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만 과세하고, 소비자에게는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

LST는 매월 VAT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되어야 하며, 해당 물품의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신고/납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LST 관련 내용 요약표는 아래와 같으며, 하기 요약표 상의 특정물품은 용량, 크기 또는 가격 등의 요소에 의거하여 LST 적용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

특정물품의 LST 과세대상 여부 및 관련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Harmonized System) Code 를 사용하는 Customs Book 을 참고해야 한다.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의 개정은 2010년 4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며, 개정된 법률에 의한 경우 특별소비세율은 200%까지 증가할 수 있다.

Group	LST Rates (%)					
	10	20	30	40	50	75
가정용품, 냉장고, 히터기, TV수신기	•	•				
스포츠 기구, 용품	•		•		•	
에어컨, 식기세척기, 건조기, 전자석 기기	•	•				
비디오 녹화기 또는 재생기	•					
사진 또는 촬영 용품	•					
고급맨션,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				
항수		•				
선박 또는 기타 해상 운송수단(정부, 공공용 제외)			•	•		

약기		•			
일정한 알코올 음료				•	•
수입피혁/합성피혁 제품				•	
털,양모피의 카펫				•	
크리스탈 유리제품(테이블, 부엌용품, 가정/오피스용 장식품 등 목적)				•	
귀금속, 보석, 진주(또는 이의 결합) 제품				•	•
벌룬 등 무동력 기구				•	
탄환과 기타 무기류(정부용은 제외)				•	•
가죽류				•	
가정, 오피스용의 가구, 비품				•	
도기제품				•	
석제품				•	
모피, 동물 털 수제의 카펫					•
항공기(정부, 공공용은 제외)					•
고급 요트(정부, 공공용은 제외)					•

Motor vehicles

Vehicle Type	Wheel Driver System	Motor System Engine	Cylinder Capacity (CC)	LST Rate
10인승 이하 승용차				
세단/스테이션 웨건	N/A	Spark ignition	<=1500 >1500 up to 3000	30% 40%

			>3000	75%
세단/스케이션 웨건 이외	4X2	Spark ignition	<=1500 >1500 up to 2500 >2500 up to 3000 >3000	10% 20% 40% 75%
		Compression ignition (Diesel/ semi diesel)	<=1500 >1500 up to 2500 >2500	30% 40% 75%
		Spark ignition	<=1500 >1500 up to 3000 >3000	30% 40% 75%
	4X4	Compression ignition (Diesel/ semi diesel)	<=1500 >1500 up to 2500 >2500	30% 40% 75%
10~15인승 승용차	All types	All types	All types	10%
Double-cabin (캠핑) 차량	All types	All types	All types	20%
특수목적 자동차				
골프용 카드 스노우 모빌, 비치용 모빌 캐프 또는 주거용의 트레일러, 캐러반				50% 60% 75%
이륜차			>250 up to 500 >500	60% 75%

Stamp Duty

인니국 인지세는 서류의 종류 등에 대해 6,000 또는 3,000 루피아로 소액이 적용되며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로 과세되는 경우는 없다.

인지세의 대상이 되는 서류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 a. 동의서, 기타 서류(위임장, 증서 등), 사실, 행위, 조건의 증거 및 증명이 되는 서류
- b. 공증증서와 그 복사본
- c. 토지권리인(Pejabat Pembuat Aktatanah)에 따라 작성된 토지의 권리증서 및 그 복사본
- d.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아래의 서류
 - 금전영수증
 - 은행 예금증명서
 - 은행계좌 잔고증명서
 - 차입금의 부분적, 전액상환에 관한 영수증, 통지서 등
 - 각종 중요서류, 예를 들어 드래프트 계약서, 지불약정서, 수취서 등
 - 모든 유가증권류
 - 우표
- e. 재판에 증거로 사용되는 서류
 - 통상의 편지 또는 내부서류
 - 본래 사용목적에서는 인지세 면제인 서류이나, 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 또는 다른 관계자에게 사용되는 물건

상기 (a), (b), (c), (e)는 6,000 루피아의 인지세가 적용된다. (d)에 대하여는, 기재된 금액이 1 백만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는 6,000 루피아, 금액이 25 만 루피아 이상 1 백만 루피아 이하인 경우는 3,000 루피아의 인지세 대상이 된다. 금액기재가 25 만 루피아 미만인 경우는 인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Land and Building (부동산세)

Land and building tax (토지 및 건물세)

토지 및 건물세(PBB)는 모든 토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며, PBB 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종교, 사회복지, 의료관계, 교육문화, 묘지, 고고학적 유적 등에 관련된 토지와 건물
- 보호삼림, 자연보호지구, 관광목적 삼림, 국립공원, 마을 관리하에 있는 목초지, 기타 국유지
- 대사관, 영사관(상대국이 인니국과 동등한 조건인 경우), 특정의 국제조직

PBB 세율은 0.5%로 책정되어 있다. 특정 과세대상에 대한 실제 세금은 과세대상의 부동산과세적용가치(NJKP)에 의해 산정되며, NJKP 는 특정 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과세적용가액(NJOP)에 대한 사전 약정비율에 의거 결정된다. NJKP 는 현재 20%(NJOP 10 억 루피아 이하) 또는 40%(NJOP 10 억 루피아 초과)의 세율을 적용하며, 관계당국은 NJKP 세율을 최대 NJOP 의 100%까지 인상 가능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현재 PBB 는 NJOP 의 0.1% 또는 0.2% 세율로 결정되고 있다.

부동산과세적용가액(NJOP)은 재무부(MOF)를 대신하여 DGT(Director General of Tax)에 의해 결정되며, 대상 지역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매 1~3 년마다 갱신될 수 있다. MOF Guideline 에 의하면, NJOP 는 토지 및 건물의 시장가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특정 토지 및 건물이 플랜테이션, 임업, 광산, 축산업 부지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는 Investment Standard 를 적용한다.

매년 DGT 에 의해 공식적으로 평가된 부동산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동 평가는 당해의 납세자에게 Tax Object Notification Form(SPOP)가 배달될과 동시에 착수하게 된다.

SPOP 는 납세자가 작성후 DGT 에게 30일 이내에 회신/제출하여야 하며, 회신된 SPOP 와 NJOP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DGT 는 Tax Due Notification Letter(SPPT)를 발급, 당해 납세자는 6 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SPOP 에 대한 부정확한 작성, 기한내 미회신, 또는 SPOP 회신/제출의무 해태 등은 부동산 재산세 결정세액의 25% 과태료가 부과되어 질 수 있다. 특정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유, 통제, 실제적 수혜를 받는 개인 또는 조직은 부동산 재산세의 납세자로 간주되어진다.

면세대상인 부동산과세적용가액(NJOP)은 1,200 만 루피아 이하의 범위이며, 이는 재무부에 의해 조정되어질 수 있다.

Tax on land and building transfer (부동산거래세)

부동산거래세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자의 간주이득에 대해 과세되며, 세율은 실제양도가액의 5%이나,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주택 및 아파트의 단순취득 관련 세율은 1%이다. 이는 L&B의 명의 이전시에 납부되어야 하며, 모든 납부된 세금은 Final Tax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세율은 실제양도가액 또는 부동산과세적용가액(NJOP) 중 높은 가액기준의 5%이나, 정부기관에 양도할 경우 Tax Base는 해당 정부관료에 의해 관련 서류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증인은 부동산취득세가 지불되기 이전에는 권리이전증서에 공증서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Duty on the acquisition of land and building rights (토지 및 건물 취득시 의무사항)

부동산 명의이전으로 권리 수령자에게는 부동산 취득 관련 의무사항(BPHTB)이 발생한다. 합당한 부동산 명의이전은 매매, 증여, 상속, 법인에 대한 기증, 등기분할, 경매, 법원명령 실행, 기업인수, 합병 등이 해당하는 바, 특정 비영리 부동산 명의이전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 취득 의무사항이 면제될 수 있다.

동 의무사항은 NPOP(Tax Object Acquisition Value)를 기초로 하며, 대개 실제양도가액 또는 부동산과세적용가액(NJOP) 중 높은 가액을 선택한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6천만 루피아 초과인 경우에만 과세되고, 이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된다. 토지건물을 상속하여 취득한 경우의 면세가액은 3억 루피아 이하의 범위에서 각 지방정부에 따라 결정된다.

동 의무사항은 공증인 면전에서 토지건물 명의 이전서에 날인한 날로 발효되고, 기업의 합병, 인수, 확장 관련 부동산 취득은 관련 서류 서명일에 발효되며, 경매의 경우, 관련 업체의 Auction Report가 작성된 날로 발효된다.

DGT(Director General of Tax)는 당해 납세자의 요청에 의거, 장부가(Book Value)에 의한 기업의 (흡수)합병, 인수 및 정부공사 관련 토지 및 건물 수용/보상시 부동산취득 이행 의무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특정 비영리 토지/건물 명의이전시, DGT는 25%, 50%, 또는 75% 경감할 수 있다.

공증인은 부동산취득 관련 의무사항이 이행되기 이전에는 권리이전증서에 공증서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Tax Payments and Tax Return Filing (납세 및 신고)

특정기간 또는 연간 세금은 지정된 은행을 통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적절한 납세신고를 통하여 세무당국에 설명하여야 한다.

세금납부와 신고는 월간/연간 또는 월간/연간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Monthly tax obligations

세금종류	납부기한	신고기한
21/26조 소득세	익월 10일	익월 20일
23/26조 소득세	익월 10일	익월 20일
25조 소득세	익월 15일	익월 20일
22조 소득세-징수의무자	익월 10일	익월 20일
4조(2)항 소득세	익월 10일	익월 20일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과세대상기업*	익월 15일	익월 20일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부가세 징수*	익월 15일	익월 20일

* 2010년 4월 1일부터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은 신고기한 전까지이며,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말일까지임.

Annual tax obligations

지연납부에 대해서는 매달 2%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1 일 이상도 1 개월로 간주)

세금종류	납부기한	신고기한
법인소득세	결산최종일로부터 4개월되는 달 말일(신고전)	결산최종일로부터 4개월되는 달 말일
개인소득세	결산최종일로부터 3개월되는 달 말일(신고전)	결산최종일로부터 3개월되는 달 말일
부동산 재산세	세무서로부터의 납세통보서 수령이후 6개월 이내	해당사항 없음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에 대해서는 다음의 벌금이 부과됨.

세금 종류	Rupiah
부가세 신고	500,000
기타 월차신고	100,000
개인소득세 신고	100,000
법인소득세 신고	1,000,000

연차 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는 2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기한전에 세무당국에 임시 산출액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통보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최종 산출액이 임시 산출액보다 높으면 부족분 납부시점까지 차액기준으로 2%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못할 경우 세무당국은 납세자에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으로 요구하는 경고서한을 발부하게 된다. 이를 무시할 경우, 세무당국은 추정세금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개별신고하며, 전국에 걸쳐 사업장 또는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등록된 지방세무서에 납세의무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 지정 세무서(PMA, 공공, 국영, LTO, MTO)에 등록된 납세자의 경우 지정된 세무서에 부가세를 통합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신고서류는 전통적인 하드카피로 준비해야 하나, 세무당국은 모든 정보를 세무당국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만드는 e-tax 신고서를 권장하고 있다. 지정 세무서에 등록된 납세의무자는 2005년부터 e-tax 신고서가 의무로 되어 있으며 e-tax 신고서는 하드카피 및 소프트 카피를 관련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정보서비스업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Accounting for Tax (회계장부)

일반적으로 기업의 회계장부는 세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장부는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어로 루피아 단위로 기재되어 인도네시아 국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다면 해외투자법인(PMA), 고정사업장 및 외국기업의 자회사들은 회계장부를 영어 및 US 달러 단위로 작성될 수 있다. KIK(Collective Investment Contract)는 US 달러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정도로 US 달러 회계처리가 가능하며, 달러단위 회계연도 개시전 3개월 이전에 세무당국에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세무당국은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승인으로 간주된다.

PSC 또는 COW 통제를 받는 기업은 세무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기만 하면 영어 및 US 달러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통보는 회계연도 개시전 1개월 전에 세무당국에 하여야 함.

영어를 사용하지만 루피아 단위로 장부를 작성하는 기업은 세무당국에 회계연도 개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세무당국에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US 달러 이외의 통화단위 사용은 금지된다. 통화 및 언어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은 루피아로 납세하여야 하며(PSC 회사 제외), 인도네시아어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 소득세의 경우 연간 신고시 US 달러와 루피아를 병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US 달러로 회계처리하는 기업 또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으면 루피아로 회계처리할 수 있으나, US 달러 회계처리 취소후 5년간은 재신청 되지 않는다.

Tax Assessments and Tax Audits (세금추징 및 세무조사)

Tax assessments (세금 추징)

Background (배경)

인도네시아는 납세자가 관련세법 및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계산, 납부 및 신고를 성실히 한다는 가정하에 자신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또는 기타 정보에 의해 납세자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면 그 납세자에게 세금추징결정서(Tax assessment letter)를 발행한다. 세금추징결정서는 또한 특정기간에 세무신고를 이행하라는 경고서한을 무시하는 납세자에게도 발행될 수 있다. 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공식적인 세금추징결정서가 발행될 수 있다.

세금추징결정서는 개별세금에 특정기간 또는 연간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된다.

- 납부세액
- 적용되는 세액공제
- 납부세액과 세액공제간의 차액 결과 (과다, 과소)
- 벌금 (지연이자 또는 부과금)

Types of tax assessment letter (세금추징 결정서 형태)

세금추징결정서 명칭은 납부세액과 세액공제 차액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의 3 가지 형태가 있다.

- 과다납부 추징결정서 (SKPLB) : 납부세액이 세액공제보다 많을 경우
- 과소납부 추징결정서(SKPKB) : 납부세액이 세액공제보다 적을 경우
- 차액없음 추징결정서 (SKPN) : 납부세액과 세액공제가 같을 경우

과소납부 추징결정서(SKPKB)가 발부될 경우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 최대 24개월간 매월 2%의 이자
- 소득세액의 50% 부과금

- 원천세액의 100% 부과금
-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액의 100% 부과금

어떤 벌금이 부과되는가는 납세의무자의 오류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벌금액은 과소납부액에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Statute of limitation (소멸시효)

2007 년도까지는 납세의무 발생일(월말 또는 연말) 이후 10 년 동안의 과소납부 추정결정서가 발행되나, 2013 년 이전까지만 계산한다. 2008 년도부터는 그 적용기간이 5 년으로 축소된다.

일단 특정월 또는 연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나면, 소멸시효(납세년도에 따라 5 년 또는 10 년)내에 납세신고서 또는 세무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자료 또는 정보가 있을 경우 추가납부 추정결정서가 발부될 수 있다. 추가적인 과소납부 추정결정서에는 납부세액의 100%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그 정보를 자발적으로 세무당국에 알리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납세신고서의 납부세액은 특정시효내에 납부추정결정이 없다면 확정금액이나, 시효가 지난 이후 법원판단에 의해 조세범죄가 결정된다면 시효이후라도 추가납부추징이 가능하다. 그러할 경우 과소납부세액의 48%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Tax audits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특정월 또는 특정연도에 대한 특정세금 또는 모든 세금에 대하여 가능하며, 해당기업 사무실 또는 세무서 또는 양쪽에서 동시에 실시될 수 있다.

Conditions triggering a tax audit (세무조사 실시 요건)

세무조사는 세금환급 신청시 항상 발생함. 세무서는 환급신청 이후 12 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환급신청 이후 수주 또는 수개월 이후부터 시작된다. 법인세 환급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되며, 다른 특정세금에 대한 환급신청은 특정세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세무서가 다른 세금을 포함한 세무조사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기타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초과납부 신고할 경우 (환급신청이 동반될 필요는 없음)
- 연간신고서에 tax loss가 있는 경우

- 제출기한에 납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세무자료를 감추는 등 세무당국이 정한 조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One-month rule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사원이 요청한 서류 및 정보를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연관되어 있다면 해당 이전가격 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한달 이내에 서류 또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면 세무당국은 인정과세 기준으로 납부의무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서류와 정보가 한달 이내에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에 있다면, 향후 납세자가 추정세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

Closing conference (종료회의)

세무조사 말미에 세무조사원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에게 세금정정 내용을 포함한 세무조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조사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면 납세자는 7영업일 이내에 문서로써 답변하여야 하며 세무조사원과 함께 최종 토론을 위한 종료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납세자는 종료회의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납세자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최종기회를 갖게 된다. 세무조사원은 조사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답변과 종료회의에서의 토론을 거쳐 최초 조사결과를 수정할 수 있다.

최종 토론결과는 종료회의록에 기록되며 조사건별로 납세자의 동의 또는 미동의 입장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회의록에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항목 중 세무조사원이 인정하는 항목 및 특정 조사결과에 대한 취소 또는 감액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최종 회의시 세무조사원과 납세자는 회의록 말미에 서명을 하며, 서명은 납세자에게 조사결과가 통보된 이후 1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종료회의에서 확정된 조사결과는 향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추징액에 포함된다.

Products of a tax audits (세무조사 결과물)

법적으로 규정된 세무조사 결과물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Tax Assessment Letter : SKP)와 징세서류(Tax Collection Letters : STP)로 구성되며, 이는 종료회의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STP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 커버하지 못하는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사용되며, 세무당국은 당해연도의 특정기간동안의 납부세액 및 지연이자를 결정하는데 이를 사용한다.

Tax Collection Using Distress Warrant (압류경고를 통한 징세)

세무당국은 징세의 법적수단으로 압류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다음의 여러가지 수단들도 있다.

- 징세통보서류
- 과소납부된 세금추징문서
- 추가적인 과소납부 세금추징문서
- 이의신청 결정문서
- 국세심판소 결정문서
- 세금수정 결정문서

관련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수령한 이후 1 개월 이내에 고지받은 과소납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연납부시 1 개월당 2%씩의 지연이자가 추가되며, 이의신청, 수정요구, 상소 또는 재판 등을 한다 하더라도 과소납부 세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7 년도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추징통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또는 상소를 하려면, 최소한 종료회의에서 납세자가 동의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세무당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국세심판소의 상소에 대한 결정이 납세자의 의견과 다르게 나타날 경우에만 징수된다.

만약 과소납부세금이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압류경고를 통하여 이후 절차를 취하게 된다.

- a. 과소납부세금이 마감기한 후 7 일 내에 정리되지 않으면 경고장 발부
- b. 과소납부세금이 경고장 발부 후 21 일 내에 정리되지 않으면 압류경고장 발부
- c. 과소납부세금이 강제조치통보서 발부 후 48 시간 내에 정리되지 않으면 재산몰수명령서 발부
- d. 과소납부세금이 재산몰수명령서 발부 후 14 일 내에 정리되지 않으면 몰수재산에 대한 경매공고
- e. 과소납부세금이 경매공고 후 14 일 내에 정리되지 않으면 공개경매 실시

Tax Dispute and Resolution (조세불복과 해결)

과세대상자와 과세당국(Director General of Tax)간의 조세부과에 대한 불복은 일반적으로 DGT의 과세부과통지에 대한 과세대상자의 이의제기에 의해 발생한다. SKPKB, SKPKBT와 CTP(Tax Collection Letter)는 과세대상자가 적시에 미납부된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DGT가 압류영장(Distress Warranty)을 발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 DGT가 압류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방법은 과세대상자와 과세당국간의 다른 불복절차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과세대상자가 다른 과세대상자로부터 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 과세대상자간에도 조세불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조세불복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Objections and appeals (불복 및 소송)

과세부과통지에 대해 불복하는 과세대상자는 DGT로부터 과세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불복청구서를 DGT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복청구서에는 과세대상자가 불복청구를 하는 사유와 과세대상자에 의해 계산된 세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2007년에 세법에 따라 미납부된 세액 중 납세자는 최소한 종료회의(Closing Conference)에서 agree한 금액은 불복청구를 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부된 세액에 해당하는 벌금은 불복청구가 기각되어 지거나 조세법정에서의 결과가 과세대상자에게 불리할 경우 다시 부과된다.

DGT는 불복청구를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결정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만약 12개월 이내에 결정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불복청구는 자동적으로 DGT에 의해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진다.

만약 불복청구가 DGT에 의해 기각될 경우 미납부된 세액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과세대상자가 다시 불복하여 조세법정으로 갈 경우 미납부된 세액에 대한 벌금은 유예된다.

제 3자간의 예수된 조세에 대해서도 같은 불복절차가 요구되며, 불복청구의 기간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세대상자가 DGT의 불복 결과통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DGT의 결정서 수취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세법정에 불복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과세대상자는 미납부세액의 50%를 조세법정이 개시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7년 세법에 의하면 납세자는 종료회의(Closing Conference)에서 agree한 금액만을 납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조건이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결국 과세대상자가 조세법정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미납부세액의 50%를 지불하도록 권고되어지고 있다.

조세법정은 보통 12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조세법정의 결정에 의한 미납부세액은 100%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Another avenue for tax dispute resolution (조세불복 해결을 위한 다른 방법)

DGT는 과세대상자의 요청이나 공적인 입장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SKP), 징세서류(STP) 또는 이러한 letter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이슈들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파생되는 이슈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불복결정서(Objection Decision Letters);
- 행정벌과금 감소/취소 결정서(Decision Letters on the Reduction or Cancella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 추징 감소/취소 결정서(Decision Letters on the Reduction or Cancellation of a Tax Assessment);
- 과다납부액 조기 환급 결정서(Decision Letters on an Early Refund of Overpaid Tax).

특정한 과세부과통지에 대한 DGT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경정청구는 대안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경정청구는 DGT의 과세부과통지 이외의 결정에 의해 야기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도 사용되어 진다.

DGT는 청구 후 6개월 이내에 Amendment Request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6개월 이내에 DGT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는 DGT에 의해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진다.

DGT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과세대상자는 DGT의 결정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Tax Court에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압류영장(Distress Warrant)과 함께 Tax Court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 경우 압류영장 개시일 후 14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Judicial Review Request to the Supreme Court (대법원 소송제기)

Tax Court의 결정은 최종판결로 간주되어 지나, 조세불복과 관련된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Peninjauan Kembali/PK)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아래의 사항들이 충족되어질 때 가능하다.

- a. 소송 상대방의 위증, 사기, 거짓 증거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 경우
- b. Tax Court에서 중요한 문서증거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문서증거가 Tax Court에서 고려되었다면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 경우

- c. 이유없이 몇몇 증거가 무시되었을 경우
- d. 요구되어 지지 않았던 다른 증거 등이 존재할 경우
- e. 판결이 현행법률과 불일치 할 경우

대법원에 대한 상고는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1 번과 2 번의 경우 기한은 조건이 충족된 후 3 개월 이내이며, 3 번~5 번의 경우 판결이 내려진 후 3 개월 이내에 상고하여야 한다.

Import Duty (수입 관세)

수입관세는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에 0%~150%가 부과된다. 관세가격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level)에 의해 계산되어 진다.

Group	Good	Rate (%)
자동차	Passenger & commercial vehicles	0 to 50
자동차 부품		15
전자제품		0 to 15
신발류		5 to 25
주류	Ethyl alcohol, 맥주, 와인, spirits	30 to 150
농산품	동식물	0 to 25
기타	화학제품, 약제류, 고무 등	0 to 10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입관세를 낮추고 있다. 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특정한 산업과 제품의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ASEAN duty rates (ASEAN 국가간 관세율)

ASEAN 국가들은 적어도 40% 이상의 ASEAN 국가가 생산한 재화에 대해 각각의 국가끼리 직접 운송되는 거래를 할 경우 일정한 경감율이 주어진다.

이는 대부분의 재화에 대하여 0%~5%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ASEAN 국가끼리의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Free Trade Area (FTA) Agreement duty rates (기타 FTA 관세율)

인도네시아는 또한 다음의 아시아 국가들과 별도의 FTA duty rates를 적용하고 있다.

- a. ASEAN – China FTA (ACFTA)
- b. ASEAN – Korea FTA (AKFTA)
- c. Indonesia – 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JEPA)

Duty relief/exemption/deferral (관세 경감/면제/유예)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과 국내투자를 증진시켜 국내와 수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세 경감/면제/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BKPM Masterlist, 보세구역, 보세창고, KITE facilities 와 Batam, Bintan 및 Karimun 의 Free Trade Zone(FTZ)를 포함한다.

BKPM Masterlist facility (투자청 자재리스트 면제)

BKPM Masterlist facility 는 적절한 기계류와 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준다.

Bonded zone (보세구역)

보세구역(*Kawasan Berikat /KB*)은 적어도 완제품의 생산가치의 50% (반제품의 경우 40%)가 수출되어질 경우 수입원자재와 수입 자본설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이다.

Bonded warehouse (보세창고)

보세창고는 재화가 국내시장에 도달할때까지 수입관세의 납부를 연장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단, 해당 재화가 제조업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함).

KITE facilities (KTIE 면제)

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면제는 완제품이 대부분 수출된 경우 수입관세의 부과없이 재화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KITE 관세환급은 수입품이 재화로 가공되어져 수출이 이루어질때 부과되는 관세를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한다.

FTZ in Batam, Bintan and Karimun (Batam, Bintan 및 Karimun의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으로 또는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재화의 이전은 수입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되며, 수입세(부가세, 특별소비세 및 Article 22 조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인도네시아의 Customs area 로의 재화의 이전의 경우, 관련 수입관세 및 수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Business license from the Management Board of FTZ(Badan Pengusahaan)

2. Masterlist from the Management Board of FTZ(관련 재화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함)
3. FTZ 거주자를 위한 소비재는 반드시 등록된 법인에 의하여 공급되어야 함
4. FTZ내의 관련 관세절차(Customs audit, customs penalty등)가 적법하여야 함
5. 납세자(PKP)로 등록될 필요는 없음

다른 인도네시아의 Customs area 와 보세구역회사로의 이전을 제외하고는 무형의 재화나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MITA (" Main Partners ") lanes

MITA lanes에는 MITA priority와 MITA Non priority가 있으며, MITA priority lane은 수입업자가 문서확인과 실물조사 없이 재화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MITA Non priority lane은 역시 문서확인과 실물조사 없이 재화의 수입이 허용되나, 위험한 재화의 수입, 일시적인 수입, 재수입, 특정한 수입품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Import licenses (수입면허)

수입규제는 주류, 무기류, 유해폐기물 등을 포함한 특정한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특별수입면허번호(NPIK; A special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는 방직물, 신발류, 전자제품 등을 포함한 특별한 종류의 물품을 수입하는데 필요하다. 또한, 가축류, 전자기기, 담배를 포함한 식음료, 완구류, 신발제품의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는 Ministry of Trade 에 등록된 수입업자로 등재하여야 한다.

Customs compliance environment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관세규제환경과 행정처벌)

세관은 수입신고서의 제출기일 후 2년 이내에 수입업자의 재화에 대해 재분류 또는 재평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행정처벌은 관세청에서 관세가 과소납부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2년 이내에 1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Contacts

PwC Tax팀은 어떠한 세무 문제에 대해서도 최고의 자문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세무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Tax와 관련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저희 Tax 전문가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General Inquiries

Ray Headifen
Ita Budhi

International Tax

Ray Headifen
Ay-Tjhing Phan

Dispute Resolution

Engeline Siagian
Ay-Tjhing Phan
Anton Manik
Mardianto
Nuryadi Mulyodiwamo
Parluhutan Simbolon
Suyanti Halim

International Assignments (IAS)

Jim McMillan
Paul Raman
Irene Atmawijaya

Inward Investment

Laksmi Djuwita
Adi Pratikto
Abdullah Azis

Japanese Desk

Hirotao Kitamura
Shunsuke Wariishi
Abdullah Azis

Korean Desk

Ali Widodo
Hong Hyeon Kim

Mergers & Acquisitions

Ali Mardi
Ray Headifen
Sindian Budi Siswojo

Payroll outsourcing

Laksmi Djuwita
Djumanto

Transfer Pricing

Ay-Tjing Phan
Sarah Stevens
Michelle Mianova
Mylynn Mu

Indirect Taxes (VAT & Customs)

Jim McMillan
Abdullah Azis
Enna Budiman

Consumer and Industrial Products,
Telecommunications and
Communications

Ay-Tjing Phan
Engeline Siagian
Ray Headifen
Jim McMillan
Ali Widodo
Nazly Siregar
Suyanti Halim
Abdullah Azis
Hanna Nggelan
M. Ilyas
Sindian Budi Siswojo
Yessy Anggraini
Yunita Wahadaniah
Andrias Hendrik
Edward Budianto
Gerardus Mahendra
Sujadi Lee
Sylvia Saputera

Energy (Hydrocarbons and
Renewables), Utilities and Mining

Tim Watson
Ali Mardi
Anthony J. Anderson
Antonius Sanyojaya
Triadi Mukti
Tjen She Siung

Gadis Nurhidayah
Alexander Lukito
Alfonso Dompas
Raemon Utama
Astrid Wohon
Christine Shannon
Shirly Suardi
Shaun McCaffrey
Simon McKenna

Financial Services and Insurance

Margie Margaret
Hendra Lie
Yuliana Kurniadjaja
Runi Tusita
Dongani Napitupulu

The information in this publication is prepared for the sole use of partners, staff and selected clients. Whilst every care has been taken in the preparation of this publication, no guarantee is given as to the correctness of the information it contains and no liability is accepted for any statement or opinion, or for any error or omission.

When specific problems occur in practice, it may be necessary to refer to laws and regulations and to obtain appropriate tax and other advice.